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264호

농촌진흥청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18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인원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301	전문임기제(나급)	1명	임용일 ~ 2028. 7. 2.	농업지능데이터팀 (전북 전주)

※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301	AI·빅데이터 전략 기획	전문임기제(나급)	■ 농업 연구·지도·행정 등 업무 전반 AX 추진 ■ 농업 분야 AI·데이터 과제 기획·분석 및 활용 지원 ■ AI·데이터 분석 결과의 타당성·정확성 검증, 재현성 테스트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이전 출생한 사람)

  ※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를 적용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12. 29.) 기준]

※ **학위 요건**(학위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구 시 제외)**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7.2.15.)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AI·빅데이터 전략 기획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 AI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AI·데이터 관리 분야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AI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AI·데이터 관리 분야 ※ 관련분야 학위: 데이터사이언스,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경력·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예) 학위(박사)√ / 학위(석사) + 경력 / 학사 + 경력 / 경력

  → 경력·학위 요건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시 부적격으로 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서류마다 응시자격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이력서' 기준 판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12. 29. 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7.2.1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일까지만 경력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직인날인**된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각종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상 '강사'로 근무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

에서 정한 교수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대학 강의 경력은 주당 강의시수 포함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경우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7.2.15.)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30.) 기준]

채용분야	우대요건
AI·빅데이터 전략 기획	○ 응시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외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AICE(Professional),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AICE(Associate), AI-POT(1급) ○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SCI(E), SSCI,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SCOPUS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
	※ 관련분야: AI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AI·데이터 관리 분야 ※ 관련분야 학위: 데이터사이언스,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 가능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함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민간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은 **직인날인된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각종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상 '강사'로 근무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에서 정한 교수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위]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외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하지 않음
  -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별 차등우대,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자격증] 직무기술서에 나열된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2개 이상 제출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중복 불인정)
- [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 실적**(1건 이상)**
  - 최근 5년 이내('22.1.1.이후)에 SCI(E), SSCI, 한국연구재단, SCOPUS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
  - 게재 당시와 제출일 현재 등재구분이 달라진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예: 게재 당시 SCI 등재 학술지 해당 → 제출일 현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첨부 시 해당 논문 게재 실적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중복 불인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반드시 제출

※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한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및 제출 불필요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온라인 인·적성검사」실시**

· (목적) 지원자의 성향, 행동 특성 및 직무 관련 역량을 사전 측정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대해 입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함

· (활용)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발표: 응시자별 실적·직무수행계획 등을 발표(10분 이내)

  – 개별질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등 평가(30분 이내)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요소 및 우리 청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동순위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농촌진흥청 인재상

《 **현장을 바꾸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혁신 인재** 》

소통·공감	**국민, 농업인 등과 신뢰 기반 소통하는 인재**
헌신·열정	**포용성을 바탕으로 열정적 자세로 일하는 인재**
현장·혁신	**융합과 창의적 사고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있는 인재**
전문성	**농업기술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1 18.(수) ~ 11. 30.(월)	'26. 11. 25.(수)~ 11. 30.(월)	'26. 12. 15.(화)	'26. 12. 29.(화)	'27. 1. 15.(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 공고 등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채용공고 게시판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2026. 11. 25.(수) ~ 11. 30.(월),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 원서 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2"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학위(졸업) 증명서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 응시요건을 '학위'로 하는 경우와 '학위+경력'으로 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6호
	근무경력 요약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응시요건을 '경력'으로 하는 경우와 '학위+경력'으로 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7호 별지서식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졸업) 증명서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요약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별지서식 제8호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관련 분야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해당 증빙서류	응시수수료 면제자

※ 외국에서 발급한 학위(졸업)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등은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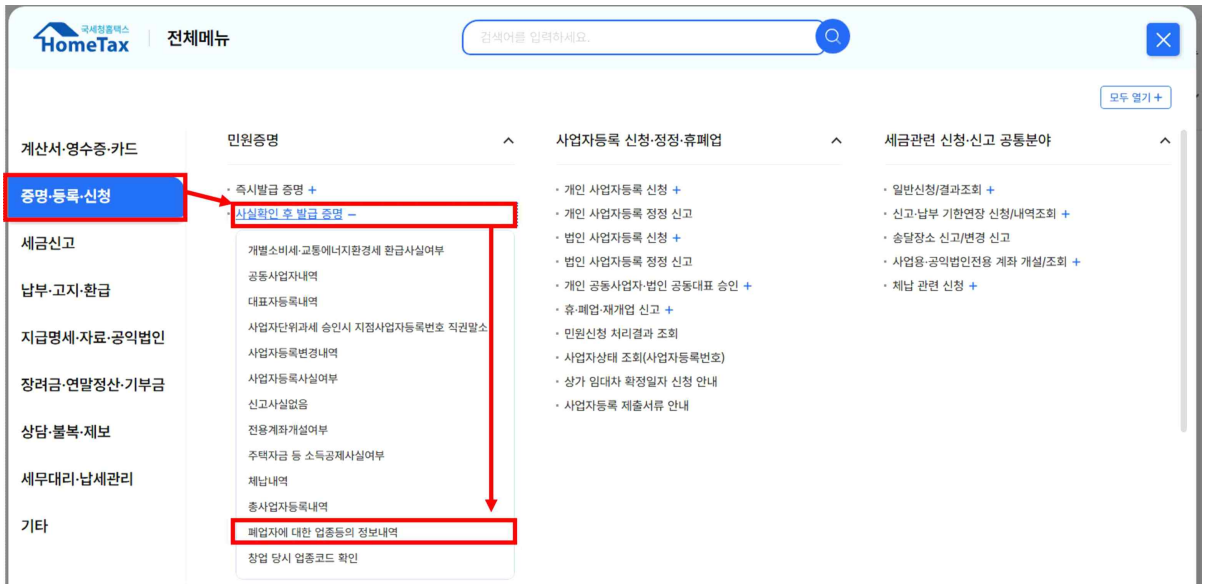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의사 철회는 담당자에게 문의(063-238-0235) 바라며, 전자수입인지는 응시자 본인이 은행·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7. 1. 15. ~ 1. 25.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7. 2. 15.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028. 7. 2.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전문임기제 나급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성과심의회를 거쳐 자율 책정할 수 있음

  *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직무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301	AI·빅데이터 전략 기획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농업지능데이터팀(전주)

주요 업무	○ 농업 연구·지도·행정 등 업무 전반 AX 추진 ○ 농업 분야 AI·데이터 과제 기획·분석 및 활용 지원 ○ AI·데이터 분석 결과의 타당성·정확성 검증, 재현성 테스트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관,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통계적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필요 지식	○ AI·빅데이터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 AI·빅데이터 분석·컨설팅을 위한 AI 모델링 관련 알고리즘, LLM, 파이썬, 리눅스, R, 하둡, 스파크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법률·규정 등)
응시 자격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 : **AI모델 개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AI·데이터 관리 분야**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데이터사이언스,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우대요건	○ 응시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학위 외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AICE(Professional),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AICE(Associate), AI-POT(1급) ○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SCI(E), SSCI,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SCOPUS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필수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외국에서 발급한 학위(졸업)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등은 반드시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공증 불필요)

⇨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미부착 시 무효처리) - 전문임기제나급: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3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ㅇ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정)을 받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ㅇ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정)을 받을 수 있음	**필수**
6. 학위(졸업)증명서 및 학위논문요약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필수) 응시요건을 '학위'로 하는 경우 또는 '학위+경력'으로 하는 경우** ㅇ **(해당자에 한함)**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ㅇ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입증 위한 **학위증명서 제출** ㅇ **학위논문 요약서(별지서식 제6호)** 작성 *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 심사위원 서명 페이지 사본 각 1부 첨부 (논문 원본 제출 불필요) ㅇ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공증 불필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에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 제출 ㅇ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임용예정일(2027.2.15.)까지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또는 해당자에 한함
7.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제8호) *** 관련분야만 제출**	ㅇ **(필수) 응시요건을 경력으로 하는 경우 또는 학위+경력으로 하는 경우** ㅇ **(해당자에 한함)**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작성 및 **경력증명서 제출**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성명·전화번호·Fax번호, 직인 등 반드시 포함(발급자 미포함 시 하단 별도 기재 가능)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공증 불필요)	**필수** 또는 해당자에 한함
8. 관련분야 연구논문 요약서 및 관련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9호)	ㅇ 관련분야 **연구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9호)**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게재지, 논문제목, 발표자, 게재일자가 표시된 페이지 첫 장 제출(논문 원본 제출 불필요)** * SCI(E), SSCI, 한국연구재단, SCOPUS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KCI 등재후보지, 학위논문은 해당 없음	해당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비고
9. 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만 제출 ※ 제출서류와 무관한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은 제출 금지	해당자에 한함
10.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1부	ㅇ 시험위원 선정 제척 시 사용 *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필수**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필수**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ㅇ 자필 서명 필수	**필수**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ㅇ 자필 서명 필수	**필수**
1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ㅇ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 1종	해당자에 한함
15. 응시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1부	ㅇ 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1종 ㅇ 해당 기관(주민센터 등) 또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